



## 공적 심사 규칙

규정번호	3-2-8
제정일자	1993.11.01
개정일자	2011.05.13
개정번호	Ver.2
총페이지	2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본 대학 내부의 시상자 선정과 외부 서훈대상자 추천시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공적심사위원회)** ① 제1조의 목적수행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현재 재직중인 전임교원, 초빙교원, 산업체겸임교원, 조교, 직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②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 사안별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위원중 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산정에서 제외한다.

**제3조(심사기준)** 내부 시상 대상자와 외부 서훈대상자 추천의 자격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교원의 교육경력 및 직원의 재직 경력
2. 교직원의 국가 정책 기여도(각종 정책연구 및 심의, 자문위원 활동 포함)
3. 교직원의 대학 발전 기여도
4. 교원의 학과 발전 기여도
5. 교직원의 사회봉사 참여도
6. 직원의 각 행정부서 업무 기여도
7. 교직원의 학생지도 참여도
8. 기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선발)** 내부 시상자와 외부 서훈 추천자 선발은 제3조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.

**제5조(준용규정)**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상훈법 및 정부의 상훈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

**제6조(규정의 개정)** 이 규칙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